

부천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5월 6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5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5. 20) 상정
-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5. 20)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남 상 수)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663호, 2005. 8. 4 공포·2006. 1. 1. 시행)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995호, 2007. 4. 5.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2조)
- 재정보증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정하고,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함.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직위를 포괄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도록 함.

(안 제4조 및 제5조)

- 회계관계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여야 할 경우에는 채권을 확보하는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안 제6조제3항)

-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보증보험 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하도록 함.

(안 제7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38호
의결 년월일	2008. 5. 23 (제143회)

제출년월일 : 2008. 5. 6.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663호, 2005. 8. 4 공포·2006. 1. 1. 시행)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995호, 2007. 4. 5.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 나. 재정보증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정하고,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 다.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되, 직위를 포괄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 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마.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바.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여야 할 경우에는 채권을 확보하는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6조제3항)

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하도록 함.(안 제7조)

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를 포괄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

년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료의 지출)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초과금액을 변상하여야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등) ① 시장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①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 또는 분임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9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7.4.5>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6.10.4, 2007.10.17>

1.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나. 삭제 <2002.12.30>

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라. 조처급명령관(繰替給命令官)

마.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바. 채권관리관

사.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사용공무원

아. 재산관리관

자. 국세환급금의 지급명령관

차. 관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카. 회계책임관

타.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파. 가목 내지 타목에 규정된 자의 대리자·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2.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징수관·경리관·지출원·출납원·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된 자외의 자로서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3.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관계법령·정관·사규 등에 규정되거나 관계법령·정관·사규 등에 의하여 임명된 자와 그 대리자·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정 1973. 07. 01 조례 제9호
개정 1976. 03. 09 조례 제181호
전문개정 1985. 05. 15 조례 제708호
개정 1987. 04. 22 조례 제813호
개정 1988. 04. 30 조례 제87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04.3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재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개정 1988.04.30>

2. 제1호에 기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개정 1987.04.22>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10만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88.04.30>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①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칙 (1973.07.01 조례 제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3.09 조례 제1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회계 관계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1985.05.15 조례 제7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 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 시행 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

부칙 (1987.04.22 조례 제813호)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4.30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